

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(NFTC 607) 일부개정(안)

1. 개정 이유

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(NFPC 607)에서 일부개정되는 동일 사항을 화재안전기술기준(NFTC 607)에 반영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전부개정에 따라 자동화재
속보설비 설치 대상에서 전기저장시설이 제외되어 이를 화재안전기술기준에
반영하기 위함(안 2.5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및 같은 법
시행규칙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 없음